

#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652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9월 4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“이의신청”을 “이의제기”로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 골자
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“이의신청”을 “이의제기”로 함(안 제34조제6항)

## 3. 참고사항 : 생략

#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4조제6항 중 “이의신청”을 “이의제기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4조(과태료) ① ~ ⑤ (생 략)</p> <p>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<u>부과·징수</u> 절차는 「질서위반 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p>	<p>제34조(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<u>부과·징수 및 이의신청</u>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p>	<p>제34조(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) ① ~ ⑤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<u>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</u>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 제목 “(과태료)”를 “(과태료 부과·징수 절차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부과·징수”를 “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4조(과태료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<u>부과·징수</u>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p>	<p>제34조(과태료 부과·징수 절차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<u>이의제기</u>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p>